



학생활동 내규

제정일	2004. 3. 1
개정일	2014.11. 1
개정차수	4차
담당부서	학생서비스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과 학칙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학내에서의 학생활동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생증

제 2조 (학생증 발급) 입학절차를 완료한 신입생은 학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 3조 (휴대) ①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하는 학생은 수강, 수험 및 도서관의 이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4조 (대여 및 변조금지) ①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변조할 수 없다.

② 전항의 행위가 발각될 시 학칙에 의거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제 5조 (학생증 유효기간)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최종 학적 변동(졸업, 휴학, 제적) 확정 전일까지로 한다.

제 6조 (재교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학생서비스과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11. 1)

1.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2. 학적부의 기재사항이 정정되었을 때
3. 복학·졸업유보 등의 사유로 학생증의 유효기간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 1호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삭제 2013. 1. 1)

제 3 장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제 8조 (집회)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학칙에 의해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술연구, 친목, 종교

활동, 체육활동 또는 봉사 목적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의 동의를 받아, 집회 7일 전 까지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집회의 금지)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행위가 목적에 위배되고 본교 내외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으며, 정기시험 1주일 전부터 그 시험이 끝나는 주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

제10조 (게시) ① 각종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행사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처에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종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본교 내 지정게시판으로 제한한다.

단, 본교 공식행사에 관한 게시물은 별도의 게시장소를 지정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③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게시물 등을 붙일 때에는 게시 3일 이전에 그 원안을 학생처에 제시하여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게시기간을 지정받은 다음에 붙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게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입간판, 현수막 등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11조 (규격 및 매수) 게시용지의 크기는 최대 전지(A⁰)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수량은 지정 장소별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장이 승인한 공식행사에 관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제12조 (보호 및 책임) ① 학생이 허가를 얻어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또는 위의 각 조항들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나, 본교당국의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 징계 대상이 된다.

② 위의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에 대하여 학생처장은 회수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 4 장 학 생 단 체

제13조 (단체의 정의) 본교 재학생으로 조직된 동호인(동일 목적추구)의 모임으로서 본교 학생회의 산하에 있는 동아리를 말한다.

제14조 (단체등록 요건)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동의하는 4개 학부(과) 이상에 소속된 25명 이상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질 것
2.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 범위가 전 학부(과)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
3.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4. 지도교수를 추대하고 취임 승낙을 받을 것
5. 기타 자격요건은 등록신청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등록절차) 동아리로서 신규 또는 재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 부
2. 임원 및 회원 명단 1 부
3. 회칙(동아리규약) 1 부
4.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 부
5. 기타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동아리승인기간) 제15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마친 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단체로 인정되며, 승인기간은 다음 학연도 등록신청 공고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9. 2.13)

제17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된다. 단,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여 즉시 그 결과를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 받은 본교 교수(조교수 이상)를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09. 2.13, 2012. 7.22)

② 지도교수는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단, 당해 학연도 사정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받아 2개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③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활동 및 운영을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타 교수에게 일정기간 업무를 대리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정) ① 단체의 모든 운영 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13)

② 단체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소속단체의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단체의 활동) ①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본교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행사는 제8조에 의한 집회신청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9. 2.13)

③ 각 단체의 모든 행사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행사 참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신청에 의해 학생처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13)

④ 단체는 행사 준비 등의 이유로 인하여 23:00 이후 교내에 잔류코자 할 경우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그 내용과 명단을 3일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단체는 각 행사의 완료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단체의 자격 상실) ① 등록된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총장은 그 단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1. 본교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단체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본교 학생회 운영규정 및 단체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1년간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5. 지도교수 사임 후 사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임지도 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6.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통폐합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2.13)

③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회원 과반수로부터 해체결의서에 서명을 받아 해체 사유서와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13)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2.13)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